

2021년 하반기

학군사관 예비후보생 소집교육
(교육자료)



육군 학생군사학교

교육진행 순서

1 신 상 변 동 사 항 확 인

2 학군사관후보생 준수사항

3 정 신 교 육

4 기타 (학군단 별도 계획)



신상변동 확인

- 개인정보(학과 및 주소, 연락처 등), 학사관리(성적 및 학기등록 등) 확인



학군사관후보생 준수사항(1/3)

■ 소집교육

- ① 연 2회 3시간 범위 내 실시(전 / 후반기 1회)
 - 미참석 시 학군단에 사경보고(공병서류 제출) / 무단 불참 시 : 1회 경고장 수여, 2회 제적처리
 - 코로나 관련 감염확산 우려 : 비소집(유선, 화상 등) 실시

■ 제적(합격취소)

- ① 군 인사법 제 10조(결격사유 등)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
- ② 소집교육 2회 무단불참 / 현역병으로 군입대 / 개인 희망시(본인 포기확인서 제출)
- ③ 대학교 무단휴학 또는 자퇴 / 학군단이 미설치된 대학으로 편입시
- ④ 대학교 징계로 인해 3학년(5년제: 4학년) 진학 또는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
- ⑤ 학기별 성적이 2회 C학점 미만 / 신청학점의 80% 미만 취득시
 - 선발과정별 성적 반영시기

구분	사경선발	정시선발
내용	2학년 1학기 ~ 2학기 (5년제 : 3학년 1학기 ~ 2학기)	2학년 2학기 (5년제 : 3학년 2학기)



학군사관후보생 준수사항(2/3)



휴학

대상

구분	정시선발	사건선발
내용	기초군사훈련 수료 이후 휴학신청 가능	2학년 1학기(5년제 : 3학년 1학기) 종료 이전까지 휴학신청 가능 / 7월 한

* 62기 사전 및 정시선발자는 현 시점에서는 휴학 불가

■ 사유: 질병 / 사고, 가사사정, 유학 / 여학연수, 교환학생

■ 기간 / 횟수: 1년 단위 / 1회 한정

■ 학군단 심의 이후 육군학생군사학교 승인시 휴학 가능

• 처리절차



학군사관후보생 준수사항(3/3)



편입: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으로 편입 가능

-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편입을 희망할 경우, 합격증을 포함하여 학군단으로 보고
- 주의: 학군단이 미설치된 대학으로 편입시 제적 처리

개인신상 변동으로 인한 학군단 보고사항

- 개명 및 연락처, 주소, 주민번호 등 변경시
- 대학 학사관리 분야: 징계 및 편입, 전과, 휴학, 성적, 신학기 등록 등
- 범법행위(단순 혼방조치 포함): 폭행/상해 및 절도, 교통법 위반, 성관련 범죄 등
 - 보고시기: 최초 상황발생시 / 진행경과 / 검찰청 처분결과

영리행위 금지(사업자 등록 등)

- 단, 생계유지 및 생활비 마련관련 단기간 아르바이트 가능



장교의 책무

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.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, 건전한 인격과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,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,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.

- 육군이 바라는 장교: **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장교**
- (이에 따라) 학군단은 **올바른 인성을 갖춘 최정예 장교를 육성**
-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
 - 법규준수는 기본! 공중도덕과 에티켓 준수까지...
 - 건강관리 및 운동을 통한 강인한 체력 구비
 - 학사관리를 통한 졸업자격 구비
 - **첫째도 둘째도 보고 : 개인신상 변동시 반드시 학군단으로 보고**
 - 특히, 범법행위 관련 학군단에 미보고하여 입관 前 신원조사에서 식별시 가중처벌



질 의 응 답



군 인사법 10조 결격사유 등



① 장교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책역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 - 1의2.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의2.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



휴 학 사 유



구 분	적 용 범 위	제 출 서 류
질병 / 사고	정상적인 군사교육 이수 곤란자	- 민간병원 진단서 / 소견서
가사사정	본인 외 가족생계 유지 불가능자	- 가사 상황 신고서 - 가사 상황 내역서 - 주민등록 등본
유 학 / 어학연수	1년 후 복학 전제	- 대학교 교정장 또는 승인서(입학 허가서) 사본 - 대학총장 명의의 각종 사유별 관련 증명서 ※ 사설어학원 및 재학 중인 대학에서 미승인한 사적 외국대학은 승인 불가
교환학생	국내 복귀후 군사교육 이수 가능자	- 교환학생 합격증 사본

* 단, 선발 이전 1개 학기 휴학 또는 대학 입학체제상 가톨릭기 입학으로 인해 3학년(5년제 : 4학년)진학각 학군단 입단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1개 학기 휴학 가능





신 원 조 사(1/2)



최근 3년간 입관 전 신원조사 결과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
특이점 있는자	94	82	56
계적처리	3	3	4

사례유형

- ① 폭행 / 상해
- 00소계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일행들을 폭행하였고, 지나가는 행인 2명이 이를 달랠까 주먹으로 각각 폭행
 - 노상에서 친구 2명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말쑥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
- ② 절도 / 재물손괴
-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이유없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
 - 차량 출입차단기를 지나가던 중 출입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부러지게 하여 손괴
 - 미상 지역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



신 원 조 사(2/2)



사례유형(계속)

- ㉓ 교통법 위반
- 음주운전 : 혈중알콜농도 0.09%의 음주상태에서 00일대 도로를 약 5Km 차량 운행
 - 무면허운전 : 00일대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0m 운행
 - 부주의 : 차량을 운행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돌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전치 3주의 상해 유발
- ㉔ 성관련
- 00지역 인근에서 피해자(女)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
 - 00지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
- ㉕ 기타
- 도박 :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후 포인트를 충전한 뒤, 총 25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도박에 배팅
 - 명예훼손 : 인터넷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
 - 전자금융거래법 :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00소계 노상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 2매를 양도
 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: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 출입시간이 아님에도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켰다가 적발
 - 연체 / 국제 체납 : 신용정보조회서와 공공정보만에 연체 대상자 및 국제 체납자로 명시
 - 방화 : 00소계에 팔아둔 폐지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에 번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 유발

